



"기획은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2. 14.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 윤 동 진
사무관 : 안 완 기
전 화 : 500-1803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3P)

이 자료는 2012년 2월 15일 오전 11시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을 농어촌답게 계획할 "마을개발전문가" 모집한다

- 농어촌 마을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추진 -

〈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마을개발 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도입

* 시범지구(7개소) : 원주시, 괴산군, 예산군, 임실군, 진도군, 의성군, 하동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마을 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로 선정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위촉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총괄계획가는 마을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직접 지급

◇ 기대효과

① 획일적 마을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특색 있는 마을 개발이 가능

②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 이후에도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③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족한 전문성을 총괄계획가가 보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 감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 올해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총 7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 원주(소초면), 괴산(청천면), 예산(광서면), 임실(신평면), 진도(군내면), 의성(사곡면), 하동(북천)

※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은 총 86개권역 (권역별 5년 이내, 총 사업비 4천억원 수준)

□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개발에 직접 참여, 봉사함으로써 환경,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농촌다움을 살린 특색 있는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총괄 계획가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원되며, 시군 등 행정 기관과 마을 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 개발의 전형(典型)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타 부처 총괄계획가 경험자,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 올해 선정된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대상지구(7개소)에 위촉하고, 위촉 되지 않은 예비 총괄계획가의 경우는 후보자 풀(Pool)로 통합 관리하면서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 *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②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③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타 부처 총괄계획가 유 경험자

- 농식품부는 금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타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유형 : 읍면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등

- 총괄계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2. 2. 27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된 공고문 첨부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 1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총괄계획가」란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마을정비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54조)

- 목적 : 마을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을 사전 분석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건강한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는 농어촌 구현

- 금회 편성된 사업비의 기본계획을 포함 권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제시함에 따라 사업종료 이후에도 마을의 방향설정에 바람직

- 시기 : 2012. 3 ~ 12월(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 여부 결정)

- 대상 : 7개소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 선정

* 원주(소초면), 괴산(청천면), 예산(광시면), 임실(신평면), 진도(군내면), 의성(사곡면), 하동(북천)

- 총괄계획가 공개모집 및 선정

- 전국을 대상으로 농어촌 계획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를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병행)을 통해 모집하여 선정

- 선정된 총괄계획가 인력풀을 시군에 제공하여 마을개발 사업에 매칭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학과(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교수, 총괄계획가 유 경험자 등

□ 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세부운영방안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 마을의 종합, 장기발전 계획에서 금회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과 향후 추가 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주민의 역량이 향상된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추진
- 운영기간 : 총괄계획가 운영을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 운영
 - 다만, 기본계획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공까지 관여하여 자문토록 운영
- 보수 : 총괄계획가 및 전담인력 등의 보수는 시군의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지급

◆ 기대효과

- 획일적 마을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특색 있는 마을개발 가능
-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리더 들의 추진방향 설정에 바람직
-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족한 전문성을 총괄계획가가 보완함으로 행정기관 부담 감소 및 이해 관계자 소통에 전문기가 투입, 조정하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대

참고 2 | 총괄계획가(MPI)제도 시범권역

도	시군	읍면	권역명	사업분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권역	소득,경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권역	인프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황새권역	인프라,소득,경관
전북	임실군	신평	대리만족권역	인프라,경관
전남	진도군	군내	금골권역	인프라,소득
경북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권역	인프라,경관
경남	하동군	북천면	북천코스모스	인프라,소득,경관